

|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6643  |
| 의 퇴 인  | 박정의원     |
| 회 답 일  | 2026.7.. |
| 추 계 번호 | 26D0713  |

#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6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환수법」, 「농지법」,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작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교통유발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기반시설설치비용, 광역교통시설 부담금,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29조(세제 및 자금지원)     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<br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및 수익계약에 의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·매각을 할 수 있음(제4항)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30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   |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「남북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6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29조(세제 및 자금지원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30조(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상세 사유

### □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(안 제26조),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세 및 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됨
- 다만,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규모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규모 및 감면율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재정수입 감소 추계가 곤란함

### □ 세제 및 자금지원(안 제29조)

-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과 함께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및 매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의 투자 규모 및 이에 따른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, 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추계가 곤란함

### □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(안 제30조)

- 개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참고로, 2026년 통일부 예산에 따르면,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 총괄표(사업비 한정)

(단위: 백만원)

| 사업        | 세부사업       | 내역사업            | 예산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통일정책      | 통일기반조성     | 한반도통일미래센터<br>운영 | 5,192     |
| 남북사회문화교류  | 남북사회문화교류   | 사회문화교류지원        | 10,368    |
| 인도적 문제해결  | 이산가족교류지원   | 이산가족교류지원        | 13,408    |
|           | 대북인도적지원    | 구호지원            | 112,230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민생협력지원          | 555,380   |
| 남북관계 기반구축 |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| 경제교류협력보험        | 3,739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경협기반(무상)        | 220,905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경협기반(융자)        | 59,051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경제교류협력대출        | 7,332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DMZ 평화적 이용      | 6,214     |
|           | 개성공단 조성    | 개성공단 운영대출       | 2,819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| 개성공단 기반조성       | 3,485     |
| 합계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,000,123 |

자료: 통일부

- 다만,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시설의 규모 및 지원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6년 기준 통일부의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·관리 예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통일부 「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·관리」 예산 : 2026년  
(단위: 백만원)

| 세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역사업             | 예산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·관리<br>(3032-303) | 개성공단 상황관리 및 기업지원 | 386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    | 198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        | 584 |

자료: 통일부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보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임지원 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|
| 임지원 | 02-6788-4664 | img1@assembly.go.kr |

